

1. 제정이유

기본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소방청 훈령을 폐지하고 국립소방연구원 훈령으로 제정하는 한편, 연구기관 기능 중심의 전문성·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서명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운영 및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

- 적용범위(안 제2조), 운영원칙(안 제3조), 소관업무(안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승인·제출·점검(안 제5조~제7조)

나. 기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안 제9조~제14조), 공무원의 정원(안 제16조~제19조)

다. 자문기구 설치 및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한 조직진단 근거 마련

- 자문기구(안 제20조), 조직진단(안 제21조)

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 및 보직관리(안 제22조~제24조), 인사위원회(안 제25조), 임용(안 제26조~제28조),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안 제29조~제34조), 승진임용(안 제35조·제36조), 성과상여금(안 제37조), 보통징계위원회(안 제38조)

마.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

-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담당공무원(안 제40조·제41조), 예산의 전용·이월 및 회계검사(안 제42조~제44조)

바.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원 직급별 정원(안 별표 1 및 별표 2)

- 별표 1 및 별표 1의2에서 일반직 계 ‘시설주사’를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로 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 운영을 위해 별표 2를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